

산림법·임업협동조합법 등 일부 개정

국회는 지난 12. 2 정기국회에서 산림법과 임협법 등 일부를 개정 하였다.

산림법을 비롯한 농림수산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골 자
산 림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山林에서 生産된 原木은 市長·郡守가 生産確認用 檢印을 찍어서 搬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篤林家와 林業後繼者가 自己所有 山林에서 生產된 原木에 대하여는,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된 自家生産確認用 檢印을 찍어서 搬出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行政簡素化 및 民願人の便宜를 圖謀하기 위함(第92條) ○休養林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違反者에 대하여는 1年 以下の懲役 또는 100萬원以上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处하도록 變更하는 등, 輕微한 山林法規違反者에 대한 罰則條項을 過怠料로 轉換함(第124條) ○採石許可時 石材의 品質 및

구 分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回收率등을 事前調查·檢討함으로써 非經濟的인 採石行為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面積에 대한 採石許可是 公認調查機關의 妥當性 評價結果에 따라 許可하도록 함(第90條의2) 山林內 採石許可時 一定資本과 裝備를 갖춘 者가 採石토록 함으로써 採石場 管理를 보다 體系化시키기 위하여 採石業 登錄制를 新設함(第90條의5) ○보전임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로 구분해 보전임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구 ○보전임지 전용시 형질변경되는 면적에 한해서만 전용부담금 등을 납입토록 함 ○수목원의 시설기준, 전문관리인 고용사항등 규정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제 폐지 ○국유림조성시 분수림설정의 경우 과수재배 목적으로도 설정 가능 ○타용도 5년이상 이용산림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이내 신고받아 심사후 형질변경허가

구 분	주 요 골 자	구 분	주 요 골 자
임 협 법	<p>가능토록 한시적 특례규정 신설</p> <p>○지역단위임협과 전문업종별 전문임협으로 구분 설립 가능</p> <p>○전문임협의 공동사업 개발과 권익증진 위해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허용</p> <p>○복수조합원제 도입(1가구2인)</p> <p>○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임명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위임. 전결처리</p> <p>○중앙회 이사 13인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2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함</p> <p>○시도지사 산림청장이 조합의 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시는 당해 조합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p> <p>○새로 임명되는 부회장·상임이사 임기는 현회장의 잔여임기로 함</p> <p>○주무부장관은 신용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해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및 신용사업 분리통합·별도법인 설립등을 검토</p>	<p>○전문조합 설립촉진을 위해 1구역 1조합원칙 폐지하고 전문조합연합회를 설립해 생산·출하조절·시장개척등 공공사업추진 가능</p> <p>○중앙회 이사 18인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을 회원조합장에서 선출</p> <p>○중앙회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임면은 부회장에 위임 전결처리</p> <p>○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독립사업부제로 운영</p> <p>○주무부장관은 신용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해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및 신용사업분리 통합·별도법인 설립등을 검토</p>	<p>농 어 촌 발 전 특 별 조 치 법</p> <p>○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을 폐지하고 비농어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 허용</p> <p>○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고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자단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함</p> <p>○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농림어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가능</p> <p>○농어촌의 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농어촌에 준하는 지원가능</p>
농 협 법	<p>○농민을 농업인으로 하고 단위농협은 지역농협으로 특수농협은 전문농협으로 명칭변경</p> <p>○1가구 2인까지 조합원 허용</p> <p>○조합해산·합병 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투표로 결정</p> <p>○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내 상임이사를 둘수 있으며 조합장 선출방식 직·간선 선택</p>	<p>○농어촌정비법 (신규 제정)</p> <p>○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를 통해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추진</p>	

구 분	주 요 골 자	구 분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영역을 논위주 농지개량사업에서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까지 확대 ○ 새로운 농지이용제도에 부합한 지역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도모 ○ 농협을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시행자에 포함 ○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 ○ 어촌생활환경 정비에 병행,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종합시행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 농업·수산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또는 농어촌 휴양지원개발 한계 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 ○ 생활환경정비사업 직접사업시 행자에 농어촌진흥공사를 추가 ○ 환지방법을 집단환지방식으로 전환 ○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민복지 향상시설 등 용지를 환지로 지정토록 하는 창설 환지제도 신설 ○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사업 중 숙박시설 범위에 취사시설 갖춘 농원 여관업 포함 ○ 한계농지개발 시행자를 농어촌 진흥공사로 함 ○ 농어촌휴양단지 정비과정에서 민자유치가 가능 ○ 농어촌정비사업효율적시행 위해 법규상 행정절차사항을 일 	농 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 의제처리토록 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만의 농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업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종묘업체, 농자재업체의 목적사업 수행위한 수험연구 실습지, 종묘생산용지 등을 예외로 함 ○ 농지개발사업지구내 비농민 소유가능 농지면적을 1천 5백m² 미만까지 허용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 상한을 3만m²로 규정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집단화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가 5만m² 까지 소유를 인정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지소유자는 징집 복역 질병 취약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농지위탁경영이 가능하고 자가 노동력 부족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수 있음 ○ 취득농지의 목적외 사용시 처분토록 하고 미처분시 농어촌 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

행정쇄신 과제 (제 59차) 확정 (발췌)

문민정부가 들어서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래 이번 제 59차 행정쇄신 과제가 확정된 내용을 산림분야만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쇄신방안	필요조치
○임야매매증명 처리기간 단축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25일 소요 ○토지거래계약신고서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소요 〈문제점〉 ○10,000m (3,000평) 이상의 임야거래시 시·군에서 복합민원으로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임야 매매증명서 처리기간과 토지거래 계약신고서 처리기간이 각각 25일과 15일이 되어 있어 불합리함 	<p>○현행 임야매매증명처리기간을 토지거래계약신고서 처리기간과 같이 15일로 단축하여 관련 민원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p>	<p>○산림법시행규칙 (제 107조1항 별지 제90호서식) 개정</p>
○산림훼손자 벌금 개정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 벌채등 산림법 제 1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을 훼손하였을 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문제점〉 ○불법 산림훼손 또는 허가지역내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원상복구지연 등 불법사례 증가로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p>○현행 산림법 제 118조 규정의 불법 산림훼손자의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벌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불법 산림훼손 방지</p>	<p>○산림법(제 118조) 개정</p>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쇄신방안	필요조치
○식목상품교환 권 판매사업 실시	<p>〈현황〉</p> <p>○도서상품권, 구두티켓 교환권등 공산품에 대한 상품교환권제도는 있으나 나무 등 임산물에 대한 상품교환권은 발행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p> <p>○현재 나무선물을 하고자 하여도 선물 수수자가 원하는 나무종류 선택과 운반비 어려워 나무선물 하기가 어려운 설정임</p>	<p>○현재 산림청 소속단체인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산물 교환권을 발행하여 각도지회에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p>	<p>○상품권 발행 : '95년 상반기 ※ 발행 예정 상품권 : 금액상품권(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p>
○국유림내 약초 재배	<p>〈현황〉</p> <p>○약초재배를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불요준 국유림에 한하여 하고 있음 〈문제점〉</p> <p>○약초재배는 산림훼손없이 재배 가능하나 약초재배는 불요준국유림에 한하여 대부하고 있으므로 약초재배 적합임지가 요존국유림일 경우 사용허기가 불가능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립어민의 소득증대차원은 물론, 약초재배자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여 국내생산 약제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국내 판매 가격의 상승 초래 및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p>	<p>○요존국유림에도 약초재배를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함</p>	<p>○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개정</p>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p>〈현황〉</p> <p>○산림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문제점〉</p> <p>○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현재의 토지의 형태나 입목·죽이 상실된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산림법 제2조(정의) 제1항1호 나목(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으로 보아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p>	<p>○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거나 입목·죽이 10년이 상 상실되어 산림 이외의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산림으로 복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한하는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p>	<p>○산림법시행령 개정</p>

조경수·분재재배실태조사 결과

산림청은 전국의 조경수 및 분재재배자의 실태조사를 하여 우루파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한 재배자의 지원대책 강구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93. 6. 30~'94 11. 30까지 재배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조경수 및 분재·소재 30평 이상 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조경수 재배자 3,957명과 분재·소재 재배자 954명 등 총 4,911명에게 45개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중 주요문항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1. 시·도별 재배자수는 판매유통 여건이 좋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2. 재배규모별로 보면 1천본이상~5천본 미만이 가장 많았고
3. 재배자의 주된 직업은 전업의 경우 조경수는 32%, 분재는 55%로 나타났다.
4. 재배자의 성별은 남자가 98%, 여자는 2%에 불과하며,
5. 재배연령별로는 조경수는 50세이상, 분재는 50세미만 청·장년이 많았다.
6. 재배자의 소재·부재를 조사한 바 조경수는 94%, 분재는 97%가 소재자이며, 부재자는 조경수 6%, 분재는 3%에 불과하였다.
7. 재배경력은 5년미만이 조경수는 37%, 분재는 26%로 신규재배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8. 재배관리실태는 본인직접관리가 78~

90%로 대부분이며, 고용인원 사역관리 10~20%, 타인 위탁관리는 2%미만이었다.

9. 분재수출은 약 60여명이 연간 약 100만\$을 일본·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나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수출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분재 재배자의 총소득중 분재소득 비중이 50%이상인 자가 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앞으로 수익전망에 대한 답변중 더 좋 아진다고 답한 사람이 조경수는 28%, 분재는 53%로 나타났다.
12. 경영상 애로사항은 판로개척이 조경수는 37%, 분재는 42%, 노동력부족이 조경수는 19%, 분재는 12%로 조사되었다.
13. 제도적 애로사항은 자연생 채취규제를 요망하는 자가 조경수 20%, 분재 34%로 나타났다.
14. 정부지원사항은 자금지원요망이 조경수 37%, 분재 49%로 조사되었다.
15. 재배기술 및 판로에 대한 정보습득방법은 본인경험이 조경수 25%, 분재 33%이며, 경험자와 상인의 조언이 조경수 58%, 분재 36%로 각각 조사되었다

○산림청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경수·분재·소재의 육성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UR시대의 농산촌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두산호랑이 광릉수목원의 새 보금자리로 이사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중국에서 기증받은 백두산 호랑이 1쌍을 서울대공원에서 일반인 공개를 마치고 종 번식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94년 12월 5일(15:30) 광릉수목원에 새롭게 단장한 사육장으로 옮겼다.

○금번에 광릉수목원으로 옮긴게 될 백두산 호랑이는 금년 3월 대통령 중국방문 시 강택민 중국주석이 한·중우호의 표시로 기증한 것으로 지난 6월 9일 중국 천진에서 항공편으로 운송하여 검역 및 환경 적응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5개월동안 과천 서울대 공원에서 일반인에게 관람도록 공개하여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야생에서는 1942년 이후 멸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1쌍뿐인 이 백두산 호랑이가 당대에서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광릉수목원의 울창한 숲내에 번식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152평 규모의 백두산 호랑이 전용사육장 시설을 완료하

게 됨에 따라 '94년 12월 5일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게 된 것이다.

○앞으로 백두산 호랑이 1쌍이 신방을 차리게 될 광릉수목원은 백두산 호랑이가 자라던곳의 환경과 비슷한 울창하고 조용한 산림내에 위치하고 있어 증식에 좋은 조건을 가추고 있다고 밝혔다. 호랑이와 같은 맹수는 암수를 합사시킬때 암컷이 수컷을 거부하는 경우 수컷이 암컷을 물어 죽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대 공원에서와 같이 암수를 분리하여 사육하지만 번식기에 맞춰 합사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광릉수목원에 옮긴 후 명년 번식기(2~3월)까지는 호랑이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공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나 번식기가 끝나는 4월 5일부터는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수컷 : '90년 8월 29일 생(4살)

암컷 : '91년 10월 26일 생(3살)

산림청 『현장애로 기술지원반』 구성 운영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207

○설치부서 : 산림청, 임업연구원

○반장 : 산림환경부장

○반원 : 임업제도 담당연구관, 산촌개발담당 연구관, 병해충예찰
당연구관, 조림·육리담당 연구관

○전화번호 : 961-2525 (FAX : 967-5001)

○설치일 : '94. 7. 28.

○기능 : 임업기술지도등

호랑이를 알아본다

1. 우리민족과 호랑이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 호랑이가 출현한 것은 약 3만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백수의 왕인 호랑이를 경외적인 신으로까지도 숭상하여 왔고 고대중국 사신도(四神圖)는 주작, 현무, 청룡의 3 가지 상상의 동물과 함께 실제의 동물인 백호를 각 방위를 수호하는 신수로 믿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랑이 기록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도록 환옹에게 빌어 곰은 신의 계율을 지켜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서 볼 수 있고 그 후로는 고려 태조 왕건의 6대조 성골장군 호경의 호랑이에 관련된 설화와 박지원의 소설 『호질』 등을 들 수 있다.

○할머님이 들려주시던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사람, 여우, 토끼에게 골탕먹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는 반면 영(靈)을 지닌 신통력있는 동물로 격상시켜 다룬 이야기도 많다.

즉 호랑이가 능히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를 지키며 약자나 효자를 도우며 신비롭고도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호랑이의 무늬나 이빨 등을 사용한 공예품은 대부분 병마나 질병, 재액 등 사악한 것을 막아주는 벽사(벽사)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적을 지니거나 벽사하는 일은 삼국시대에 수입되어 고려 때 성행하였던 도교에 근원을 둔 습속이다.

○조선시대 문무관, 당상관들이 왕의 행사를 수행할 때 외국의 사신으로 파견될 때 또는 국난을 당할 때에 착용하던 복식(융복 戎服)의 주립(朱笠)에 입식(笠飾)으로 호랑이 수염(虎鬚)를 꽂는 제도가 18대 현종부터 생겼다가 고종 원년에 폐지되었다.

2. 역사

○우리나라는 대륙에 접한 반도로써 산지가 많아 백두산에서 전남 목포에 이르는 전역에 걸쳐 많은 수의 호랑이가 서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로 인한 인명이나 가축의 피해가 심하여 호랑이를 잡는 임무를 지닌 착호감사라는 특수병사를 두고 호랑이를 잡은 자는 포상 또는 승급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호환을 피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거나, 외딴 산길에서는 집단으로 행동하였다.

기록된 수량만 보더라도 1915년부터 1942년까지 호랑이 97마리, 표범 624마리, 곰 1,039마리, 멧돼지 17,044마리, 노루 50,740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후 6. 25 동란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마침내 우리의 금수강산은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호랑이는 1924년 전라남도에서 6마리가 포획된 이후 남한에서는 멸종되었다.

○ 1994년도산 산림용('95 조림용) 묘목(성묘) 가격

(원/천본)

수 종	묘 령	'94산 가격	비 고
강 송	1 - 1	91,000	
잣 나무	2 - 1	158,000	
	2 - 2	166,000	
	2 - 3	260,000	
	2 - 2 - 3	1,346,000	○ "분"뜨기 묘목
낙 염 송	1 - 1	144,000	
삼 나 송	1 - 1	163,000	
편 백	1 - 1	170,000	
	1 - 1 - 1	262,000	
	1 - 2 - 2	1,216,000	○ "분"뜨기 묘목
화 백	1 - 1	162,000	
해 송	1 - 1	88,000	
	1 - 1 - 2	1,015,000	○ "분"뜨기 묘목
리 기 다	1 - 0	48,000	
	1 - 1	81,000	
리 기 테 라	1 - 0	43,000	
	1 - 1	85,000	
스트로브잣나무	1 - 2	136,000	
	2 - 2 - 3	1,468,000	○ "분"뜨기 묘목
버지니아소나무	1 - 1	87,000	
상수리나무	1 - 0	121,000	
자작나무	1 - 0	127,000	
	1 - 1	256,000	
물푸레나무	1 - 0	93,000	
	1 - 1	214,000	
느티나무	1 - 0	135,000	
"	1 - 1	260,000	
루브라참나무	1 - 0	136,000	
전나무	2 - 2	173,000	
"	2 - 3	231,000	
두충나무	1 - 0	148,000	
이태리P	c1/1	433,000	
양황철나무	c1/1	433,000	
수원포플러	c1/1	433,000	
밤나무	저접	535,000	
"	고접	870,000	
아까시나무	1 - 0	85,000	
오리나무	1 - 0	115,000	
옻나무	1 - 0	180,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을 95% 이상의 묘목(불합격 5%미만 포함)에 대한 기준가격이고 대묘는 검사합격을 100%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분"뜨기묘목은 새끼묶기와 비닐싸매기) 소정의 품질 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

단, 분뜨기묘목은 상차인도가격임.